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

발의연월일: 2024. 5. 31.

발 의 자:정청래·강준현·한민수

양문석 • 정진욱 • 김병주

임오경 · 김동아 · 이원택

신영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·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 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 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,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,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,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,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,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

으로 함(안 제9조 및 안 제13조 등).

또한,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받아 임명한다"를 "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에서"를 "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임명한다"를 "임명하되,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"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"9명"을 "21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제6항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.
-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. 이 경 우 각 교섭단체는 특정 성(性)을 1명 이상 추천하여야 하고, 국회

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
- 2.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. 이 경우 특정 성(性)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3.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. 이 경우 특정 성(性)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
 - 가.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
 - 나.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
 - 다.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
-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. 이 경우 특정 성(性)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
- 6.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, 공모·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- 다만,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에 규정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

-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.
- ⑨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 여야 한다.
- 제14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5의2. 사장·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
 - 5의3. 제14조의2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
-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4조의2(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 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,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 -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인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.
 -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를 보장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호 중 "사장ㆍ이사"를 "이사"로 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9조(임원) ① (생 략) 제9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 ② -----제13조에 따른 이사 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 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를 받아 임명한다. 다. ③ -----이사회의 제청으로 ③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. 방송통신위원회에서-----.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다. ④ -----임명하 되,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. 제13조(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) 제13조(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(생략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. 명----.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 성,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 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 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신위원회가 임명한다. 한다.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 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 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특정 성(性)을 1명 이상 추천

- 하여야 하고,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- 2.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. 이 경우 특정 성(性)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3.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4명. 이 경우 특정 성(性)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
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
 가.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나.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다.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 천 2명
-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명. 이 경우 특정 성(性)이 1 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
- 6.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

<신 설>

④·⑤ (생 략)

⑥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<</td>선 신설>

<u><신 설></u>

천하는 사람 1명

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, 공모·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
<u>⑤</u>・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)

<u>7</u> -----

다만,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 의2에 규정된 사장후보국민추천 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 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해 재적이 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.

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 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 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<신 설>

⑦ ~ ⑨ (생 략)

제14조(이사회의 기능) ① 이사 제14조(이사회의 기능) ① -----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 • 의결하다.

1. ~ 5. (생략) <신 설>

<신 설>

6. ~ 12. (생 략) ② (생략) <신 설>

임명제청한다.

⑨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 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① ~ ② (현행 제7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)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5의2. 사장·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

5의3. 제14조의2의 사장후보국 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

- 6. ~ 12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의2(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공사 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 한 국민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

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

- <u>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</u> <u>다.</u>
-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,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한다.
-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인 이하의 복수 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